

전기안전문화 정책

김종민, 이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연구원

Policy of Electrical safety culture

Chong-Min Kim, Jun Lee
Electrical Safety Research Institute KESCO

Abstract ○ 전기안전문화에는 교육, 홍보, 제도, 의식 등 모든 관련분야가 포함되며, 구성원들이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관심사항을 스스로 다짐하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합된 것으로 전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안전성에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협신과 책임이 요구되며 대국민 안전의식 개혁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기안전 및 재해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1. 정의 및 필요성

가. 정의

- 국제적으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채르노빌 원자력 누출 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nobyl Acciden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 원자력안전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합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협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 국내에서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95년 이전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이었으며, 근로자의 개인보상 차원에 국한되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민간이 주도하는 비제계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로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문화를 정의하게 되었다.
- 전기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전기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태도 등의 종체적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종체적 의미한다.

나. 필요성

-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과 결과 위주의 정책, 성과의 조기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예측된 능률이 고착화되어 “빨리 빨리”란 말이 우리나라의 상징어가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급증을 유발시켰고, 불안정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간접비용의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사회적 재난 예방대책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홍보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조직적 활동이 필요하다.

2. 전기안전문화의 목표와 방향

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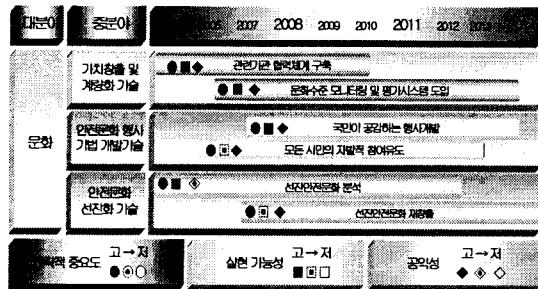
- 전기안전 문화의식 향상 도모
- 국민 참여에 의한 전기안전문화 운동 전개
- 전기안전 활동 인프라 구축
- 홍보매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나. 방향

- 전기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전기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 전기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전개
- 선진 안전문화의 자료 수집 및 국내 적용기법 개발
- 국가적 종합 재난관리체계와 연계된 제도적 전기안전의 시스템 개발

3. 전기안전문화의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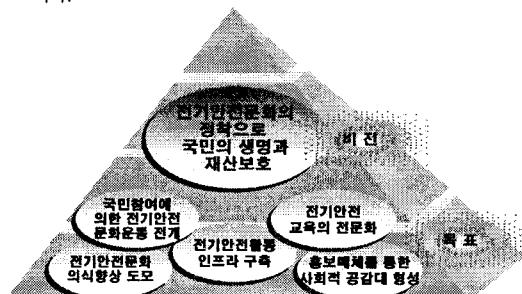
- 10년 동안의 중장기 기간에 전기안전문화의 주요 기술들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각 세부의 개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최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그림 1> 전기안전문화 로드맵

4. 결 론

- 전기안전문화는 가치창출과 계량화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기안전문화 영향 평가제도가 포함되며, 전기안전문화 행사에는 케페인 등 행사개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기법개발, 전기안전문화의 선진 안전문화 분석 및 선진 안전문화 창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기안전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언론·인쇄·영상매체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일반 홍보매체 개발, 전기안전 체험관 및 이동용 체험차량 등 전기안전 체험공간에서 활용하고 있다.
- 전기안전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체계 구축,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와 전기안전 관련법 마련 등을 위한 제도·규정 개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전기안전기술지도(Electrical Safety Technology Roadmap) 설계 연구” 산업자원부(2005. 6. 30)